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2821
결재일자	2016.3.31.
공개여부	부분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14호

★ ◎

★주우관	인권팀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
김재환	최경백	정종근	03/31 代김종순	
협조				

-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-  
**2016년도 산업재해 종합 관리 계획**

2016. 3.

 **성동구**  
**【 감사담당관 】**

# 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/ul>
여 성 친 화 도 시	성 평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·편 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족·공 동 체 회 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성 참 여 <input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 경 영 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유 지 비 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 른 공 공 언 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 약 계 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 등 발 생 요 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/ul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 자 행 정 서 비 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(리 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홍 보 제 목 :</li> <li>● 중 점 홍 보 사 항</li> </ul>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-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-

# 2016년도 산업재해 종합 관리 계획

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도모하며, 관리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## I 관련 근거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(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)
  -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는 한편,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.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(제31조 안전·보건교육)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(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)

## II 우리 구 사업장 관리현황

우리 구 사업장 관리현황 (기준일: 2015. 12. 31. 현재)

연번	부서명	사업장수	근로자수	연번	부서명	사업장수	근로자수
	<b>총 계</b>	<b>69</b>	<b>1,315</b>	12	노인청소년과	4	486
1	총 무 과	5	58	13	청소행정과	1	113
2	자치행정과	1	2	14	공원녹지과	4	48
3	교육지원과	2	7	15	토지관리과	1	1
4	문화체육과	1	4	16	안전관리과	1	1
5	전산정보과	2	8	17	교통행정과	1	37
6	민원여권과	1	2	18	교통지도과	3	30
7	지역경제과	4	7	19	토 목 과	2	8
8	일자리정책과	6	218	20	치 수 과	2	14
9	복지정책과	1	2	21	건강관리과	9	19
10	보육가족과	1	15	22	보건의료과	7	13
11	사회복지과	5	176	23	질병예방과	5	46

III

## 우리 구 산재현황 및 문제점

### 1 우리구 산재 발생 현황

연도별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
사업장수(개소)	50	70	69
근로자수(명)	2,166	1,376	1,315
<b>발생건수</b>	<b>11건</b>	<b>8건</b>	<b>10건</b>
<b>재해율(%)</b>	<b>0.50</b>	<b>0.58</b>	<b>0.76</b>

※ 전국 재해율(매년 초 발표하는 안전보건공단 자료 참조)

: '13년 0.59% ⇒ '14년 0.53% ⇒ '15년 0.50%

부서별

연번	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	비고
	계	11	8	10	
1	일자리정책과	1건	2건	2건	공공근로(4건), 지역공동체(1건)
2	세무1과	-	1건	-	개별주택현황 조사사업(1건)
3	사회복지과	2건	1건	1건	재가관리(2건), 장애인행정도우미(1건) 자활근로(1건)
4	노인청소년과	3건	2건	4건	노인일자리(8건), 재가관리(1건)
5	청소행정과	1건	-	3건	환경미화원(4건)
6	공원녹지과	3건	-	-	공원녹지유지관리(2건), 공무원(1건)
7	교통지도과	1건	-	-	불법주정차단속원(1건)
8	질병예방과	-	2건	-	방역소독(2건)

연령별

연번	구분	계	2013년	2014년	2015년
	계	29	11	8	10
1	30~39세	2	2	-	-
2	40~49세	4	-	1	3
3	50~59세	9	5	3	1
4	60~69세	5	2	1	2
5	70~79세	6	2	1	3
6	80세이상	3	-	2	1

근로형태별

구분	계	2013년	2014년	2015년
계	29	11	8	10
공무직	1	1	-	-
무기계약직	4	1	-	3
기간제	10	5	4	1
일용직	14	4	4	6

시기별(2013년 ~ 2015년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재해자수	3	1	3	3	4	2
구분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재해자수	2	2	1	6	0	2

유형별

구분	계	2013년	2014년	2015년
골절, 삐임	17	7	4	6
타박상, 부딪힘	8	3	3	2
찢림, 베임	2	1	-	1
기타	2	-	1	1

## ② 재해원인 분석

### 부서별

-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가 많은 공공일자리 사업부서인 일자리정책과 및 노인청소년과에서 전체 산재의 48% 이상 발생(29건 중 14건)
- 사회복지과, 노인청소년과, 일자리정책과는 매년 산업재해 발생

### 연령별

-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가 전체 산업재해자의 4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매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음
- 이는 공공일자리사업(공공근로, 노인일자리사업)이 꾸준히 지속됨에 따른 것임

### 근로형태별

- 사업부서 업무담당자 및 일시적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매년 채용되는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

### 시기별

- 야외작업이 많은 봄, 가을철인 3~5월(10건), 9~10월(7건)에 발생한 재해가 전체의 58%를 차지하고 있음
- 겨울철(1월, 2월, 12월)은 작업 중 눈길 또는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 다수

### 유형별

- 골절 · 베임(17건): 전체의 58% (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리나 팔이 부러지거나 뺨)
- 타박상, 부딪힘(8건): 전체의 27% (미끄러지거나, 시설물에 부딪혀 타박상)
- 찢림 · 베임(2건): 전체의 7% (시설물에 부딪혀 베이거나 찢림)

## ③ 문 제 점

- 부서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다양하고, 사업장 또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산재관리가 용이하지 않음(23개 부서 69개 사업, 1,315명)

### ○ 대책

- 매일 업무시작 전 안전수칙 낭독 및 준비운동 실시
- 매월 안전의날 실시 및 부서장 관심도 제고

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는 고령층의 산재 발생건수가 꾸준하여 2015년 산재의 60%(10건 중 6건) 차지

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 보고 지연

○ 대책

- 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위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제출
- 산업재해 업무처리 매뉴얼의 숙지

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들의 산재예방에 대한 안전 의식 부족

○ 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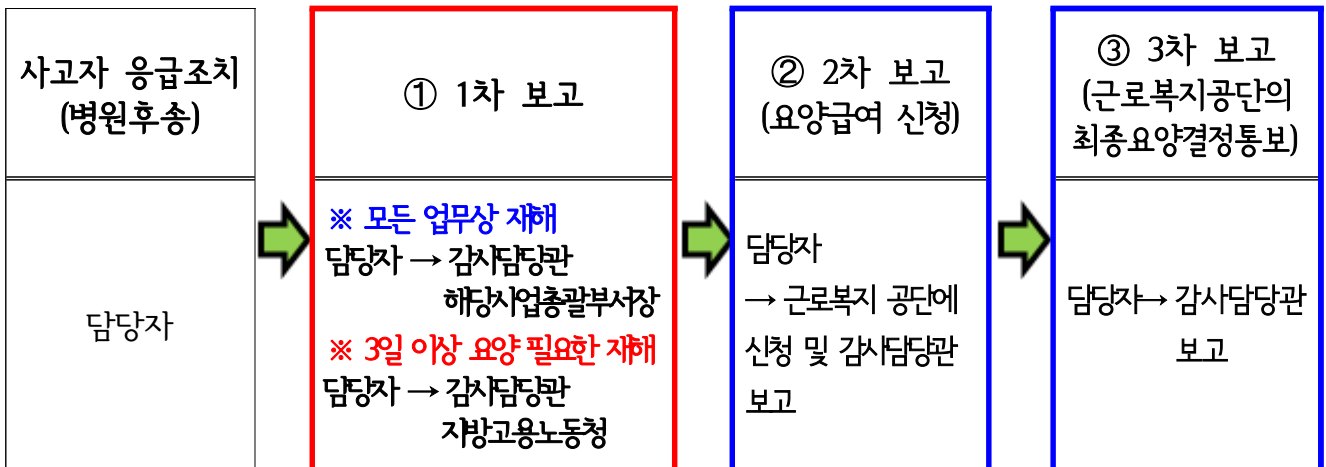
-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의 의무화
- 담당자의 무사안일 의식 근절을 위한 교육 실시

### III 산재관리 세부추진 계획

#### 1. 산업재해 종합 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 -----<감사담당관>

- ▷ 현행: 산재 발생시 관련 직원 조치 미비
- ▷ 개선: 산재 발생시 조사 결과 발생 원인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일 경우, 사안 경중에 따라 관련 직원 조치

보고체계



## □ 보고요령

### ① 1차 보고: 업무상 발생한 모든 사고

- 사고 현장 담당자는 신속하게 '해당 사업 총괄 부서장' 및 '감사담당관'에 보고
- 보고기한: **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**(사고발생 동향보고는 즉시)
- 보고방법: 업무관리시스템 서식 NO.68 사고경위조사보고서 내부결재(감사담당관 인권팀 협조)
- 첨부서류: 담당자 현장 출장보고서(현장사진 포함), 재발방지계획서, 의사소견서(진단서)  
**※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보고(전화, 팩스 등)**

### ② 2차 · 3차 보고: 산재(요양급여) 신청(2차), 공단의 최종 요양결정통보(3차)

- 2차 재해자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, 해당 사업 총괄 부서에서 처리
- 3차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요양 결정 통보 시(승인 또는 미승인)
  - 보고방법: 일반 기안문 형식
  - 첨부서류: 1차 보고서 및 요양신청서 사본, 재발방지계획서, 기타 관련 서류

## 산업재해보고의무 ※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조

- 사업주는 **3일 이상**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
  1. 지방고용노동청(성동구 관할: 서울동부지청)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
  2.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해야 함
- **중대재해는 지체 없이**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(전화, 팩스 등)

### ✓ 중대재해란?

- 사망자 1인 이상 발생
-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
-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

### ▶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(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)

**위반 시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**



## 2. 사업장별 관리 감독 및 책임 강화 -----〈감사담당관, 해당부서〉

### 사업장 안전 점검 실시(감사담당관, 해당부서)

- 점검횟수 강화: 연 2회 ⇒ 매월 실시(해당부서)
- 점검내용
  - 작업장의 안전실태 및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
  - 안전교육실시 여부
- 점검방법: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거 사업장 방문 점검
- 점검결과: 준수사항의 이행 독려,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후 결과 제출(해당부서)
  - ※ 공단위탁 재활용선별장은 자체 안전 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

### 사업장별 안전관리대책 자체 수립 후 시행(해당부서)

- 사업시행 및 근로자 채용 시에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여 계획수립
  - 작업내용별 기본 안전 수칙
  - 작업장 안전관리점검 실시 방법 등
- 매일 업무시작 전 안전수칙 낭독 및 준비운동 실시

### 사업장별 안전책임자(사업담당부서장) 및 안전관리담당자(사업담당직원)의 안전보건 관리 역할 강화(해당부서)

-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책임감 부여
- 안전관리담당자의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
  - 근로 시작 전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
  - 개인안전 보호구의 착용 철저 지도
  - 산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
- 교육일지 및 안전점검일지 작성 비치(감사담당관 확인- 분기별)

###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처리 능력 제고

- 산업재해 발생 유형 및 발생 시 처리절차, 예방 방법 등 참고자료를 우리 구 서울행정시스템 FAQ에 등재, 담당자가 숙지토록하여 업무 능력 제고

### 3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-----〈감사담당관, 해당부서〉

#### 부서별 담당자 산업안전 교육 실시(감사담당관)

- 교육대상: 각 사업(공공근로, 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) 운영 담당자
- 교육횟수: 연 2회
- 교육강사: 협회 추천 외부강사 초빙
- 교육내용: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적용기준, 산재예방의 필요성, 안전수칙 등에 대해 교육하여 담당자의 무사안일 의식 근절

#### 사업장별 소속 근로자 교육(해당부서)

- 교육대상: 사업장 소속 근로자(공공근로, 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자 등)
- 교육방법
  - 사업장별 책임자 지정
  - 매일 업무 시작전 안전수칙 낭독 및 준비운동 실시
  - 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해당부서 안전관리담당자가 반드시 사업장별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육 실시

#### 「안전점검의 날」 운영

- 운영목적: 안전의식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
- 운영시기: 매월 마지막 주
- 주요내용
  - 사업장별 자체 안전점검 및 교육
  - 사업장별 사고 요인 색출
  -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

## IV 행정 사항

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----- 전부서

부서별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제출 ----- 해당부서

- 붙임 1.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내역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내역  
2. 산업재해 업무 처리 매뉴얼. 끝.